

---

#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

2020년 8월 19일

한국경영학회 특별세션 발표

윤태화(가천대), 박종성(숙명여대), 이영한(서울시립대)

---

# 목 차

---

1. 가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  2.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현황
  3. 관련 해외사례
  4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
  5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
  6. 결론
-

---

# 1. 가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---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성장지원 필요

### □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의 완화를 위한 중견, 중소기업 성장지원 필요

-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대기업위주로 편중.
- 2017년 국내 수입금액 상위 0.1% 소득이 전체 기업소득의 52.1%에 달함.
- 2019년 상위 100대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3.9%를 차지



-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(통계청 및 관세청)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수요증가

### □ 중소기업 대표자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업승계 수요증가

-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제조기업 경영자 연령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영자 비중이 23.2%를 차지. 약 32,000명의 중소기업제조기업 경영자가 기업승계를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임.
- 2012년 60대이상 고령 경영자 비중 14.1% => 2018년 23.2%로 고령화 지속

| 매출액규모 | 2018년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자 연령 현황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| 경영자수 (명)                 | 30대이하(%) | 40대/50대(%) | 60대이상(%) | 평균연령 (세) |
| 전체    | 138,222                  | 4.3      | 72.4       | 23.2     | 54       |
| 소 기 업 | 127,886                  | 4.5      | 73.3       | 22.1     | 54       |
| 중 기 업 | 10,336                   | 2.4      | 61.2       | 36.3     | 57      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2012   | 2013   | 2014   | 2015   | 2016   | 2017   | 2018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중소기업 대표자<br>60대이상 비중 | 14.10% | 15.90% | 17.10% | 18.70% | 20.10% | 20.60% | 23.20% |

- 2018년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자 연령통계(중소벤처기업부 통계)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장수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와 장수기업 육성 필요성

### □ 장수기업과 비장수기업의 경영성과 차이

- 장수기업의 육성은 장기간 기업경영으로 인해 축적된 기술, 경영기법, 브랜드 가치 등 사회적, 경제적 자산의 유지,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나, 중소기업의 10년 평균 생존율은 15%에 불과
- 조덕희(2019)의 연구는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.
- 이미영과 이덕훈(2018)은 가업승계 이후 가족기업의 장기성과를 분석한 결과 가업승계이후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으며 후계자의 지분율과 승계기간이 길수록 장기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결과 제시
- 중소기업연구원(2019)에 따르면 업력 50년 이상 중소-장수기업은 중소-비장수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, 부가가치의 절대규모에서 30배 이상이 더 크게 나타나, 국가경제적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.

| 구분   | 장수 중소기업 평균 | 비장수 중소기업 평균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영업이익 | 249억원      | 7억원         |
| 부가가치 | 578억원      | 19억원        |
| 부채비율 | 84.3%      | 105%        |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현상

### □ 기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포기현상 발생

-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최고 50%이며, 비상장주식 2018년까지는 중소기업도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존재하여 최대 상속세부담이 65% 수준까지 존재
- 후대 경영자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별도의 사재를 매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지분희석화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.
- 최근 우량 장수기업이 기업승계과정의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나 비관련 업종 기업에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함.
- 유니더스, 쓰리세븐, 요진건설산업, 락앤락, 농우바이오, 까사미아, 유영산업, 우리로광통신, 에이블씨엔씨 등의 사례가 존재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기업승계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매각사례

| 회사명<br>(설립연도)    |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유니더스<br>(1973)   | 고무의류, 콘돔<br>(세계1위)        | 2015년 창업주 별세로 아들이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상속세 50억원의 재원부담이 어려워 2017년 사모펀드 매각  |
| 쓰리세븐<br>(1975)   | 손톱깎기 제조<br>(2008년이전 세계1위) | 2008년 창업주 별세후 약 150억원 상속세 재원 부담이 어려워 유족들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, 이후 적자 시현  |
| 요진건설산업<br>(1976) | 중견 건설사                    | 2014년 故 정지국회장 별세후 상속세 900억원 발생, 상속세부담으로 후계자 일가는 2015년 사모펀드에 경영권 매각(총 지분 45%) - 이후 故 정회장과 공동 창업자였던 최준명 現 회장이 2017년말 지분을 재매입,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2배 이상 차익 발생 |
| 락앤락<br>(1978)    | 밀폐용기 제조<br>(세계 점유율 5위 이내) |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2017년말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에 지분 매각   |
| 농우바이오<br>(1981)  | 종자 및 묘목생산<br>(국내 1위)      | 2013년 창업주 별세후 상속세 1,200억원 부담으로 유족들이 경영권을 농협경제지주로 매각   |
| 유영산업<br>(1992)   | 신발원단제조<br>(국내2위)          |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매각가치보다 크다고 판단. 2017년말 사모펀드에 매각   |
| 우리로광통신<br>(1998) | 광통신소자제조<br>(국내1위)         | 2013년 창업주 별세후 유족들이 140억원의 상속세 재원마련을 못하여 인피온(투자자문업체)에 경영권 매각   |

# 기업승계 활성화의 사회적 효익과 필요성

## -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조세회피전략

### □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조세회피전략의 부작용

- 참여연대(2019)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감기업(31,899개)중 가업상속공제 가능 기업은 30,799개에 달하지만 2018년 가업상속공제 이용기업 103건,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기업 204건에 불과.
- 이렇게 이용가능 기업 대비 이용건수가 적은 이유를 참여연대(2019)는 기업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별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.
- 특수관계자 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, 합병과 분할을 통한 상속세 조세회피전략 등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시도할 유인
- 이러한 공격적 조세회피는 많은 비조세비용을 유발함 :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 또는 분할로 기업가치 하락 및 고용불안정성 증대, 일감 몰아주기 행태로 인한 공급시장의 교란 등
- 또한 기업승계 경영자들 입장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, 소액주주의 배임 소송제기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됨.
- 따라서 합법적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변칙적,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 수행에 따른 비조세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.

---

## 2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현황

---

#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

- 조특법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(조특법 30조의 6)
  -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상속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 1월 1일 도입,
  -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(최대 50%)을 적용받지 않고 10% 또는 20%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
  - 선대 경영자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시점에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정산 -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.
- 조특법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증여세 산정
  - 증여세 산출세액 = [가업자산 상당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 한도) - 5억원] × 10%(과세표준30억원 초과분은 20%)
  - 가업자산상당액 = 증여한 주식가액 × ( 1 - 사업무관자산가액/총자산가액)

#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전요건

| 요건종류      | 내역  |
|-----------|---|
| 증여자<br>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증여일 현재 <b>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</b> 부모(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부모를 포함)일 것</li> <li>· 증여자인 부모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<b>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(상장법인은 30%) 이상의</b> 주식을 <b>10년동안 계속 보유</b>할 것</li> <li>·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</li> </ul> |
| 수증자<br>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증여일 현재 <b>18세 이상으로서</b> 거주자인 <b>자녀</b>일 것</li> <li>·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, 증여일로부터 <b>5년 이내에 대표이사</b>로 취임할 것</li> <li>· <b>2인 이상</b>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</li> </ul>   |
| 증여재산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식 또는 출자지분</li> </ul>  |

#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후관리요건

- 가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**7년 이내**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이자 상당액과 함께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
| 사후관리요건       | 위반 내역  |
|--------------|--|
| 가업종사요건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증자가 주식 등의 <b>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</b>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<b>7년 까지</b>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</li> <li>· 가업의 <b>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</b> (단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의 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허용)</li> <li>· 가업을 <b>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</b></li> </ul> |
| 수증자의 지분 유지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증자가 <b>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</b></li> <li>·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<b>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</b></li> <li>·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<b>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</b></li> </ul>   |

---

### 3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해외사례

---

# 일본의 가업승계지원 세법 규정

## □ 일본의 사업승계세제(事業承継税制)와 경영승계원활화법

- **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 고용확보,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9년 세제 개정시 도입** :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(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(平成20年法律第33号):‘경영승계원활화법’이라고 함)’이 2008년 5월에 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세제상 지원하는 것임.
- 경영승계원활화법상 중소기업(경영승계원활화법 2조)

| 업종                   |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| 종업원수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제조, 건설, 운송, 기타       | 3억엔 이하      | 300명 이하 |
| 고무제품 제조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900명 이하 |
| 도매                   | 1억엔 이하      | 100명 이하 |
| 소매                   | 5천만엔 이하     | 50명 이하  |
| 서비스(sw, 정보처리서비스업 제외) |             | 100명이하  |
| sw, 정보처리서비스업         | 3억엔 이하      | 300명 이하 |
| 여관업                  | 5천만엔 이하     | 200명 이하 |

출처 : 김대홍. 2019. 최신외국법제연구. 가업승계제도를 위한 일본의 세금지원혜택

# 일본의 가업승계지원 세법 규정

## □ 일본의 사업승계세제(事業承継税制)의 증여세 납세유예제도

- 기업승계를 위해 후계자가 증여를 위해 취득한 **주식이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용 자산의 증여세가 면제됨.**
-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**5년간 사후관리요건이 요구됨.**
- 증여세 납부유예 중 선대 경영자(증여자)가 사망한 경우에는 **유예된 증여세는 면제된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선대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- 도도부현지사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의 납세유예 가능**
- 기업요건 : 중소기업, 상장사/풍속영업회사가 아닐것, 자산보유형회사(업무무관부동산 등 70% 이상보유, 혹은 부동산운영수입이 75% 이상) 아닐 것 등

| 증여자 요건  | 수증자 요건 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회사 대표자이며 증여시까지 대표자 퇴임</li> <li>• 증여자와 동족(친족)과 함께 <b>의결권주식 총수의 50% 이상 보유, 증여자가 최대주주일것</b></li> <li>• 일정수이상 주식을 일괄하여 증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회사의 대표자이며 20세이상. 임원 취임 3년경과</li> <li>• <b>증여이후 후계자와 동족관계자가 의결권주식 총수의 50%이상 보유, 수증자가 최대주주</b></li> </ul> |

출처 : 김대홍. 2019. 최신외국법제연구. 가업승계제도를 위한 일본의 세금지원혜택

# 일본의 가업승계지원 세법 규정

## □ 일본의 사업승계세제(事業承継税制)의 증여세 납세유예제도

- 증여세 납세유예 사후관리요건

| 요건                     | 5년간 유지요건 | 5년경과후 유지요건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자일것         | ○        | X          |
| 종업원수 80% 이상을 5년간 평균유지  | ○        | X          |
| 후계자가 동족 내에서 최대주주       | ○        | X          |
| 상장사,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| ○        | X          |
| 유예대상이 된 주식을 계속 보유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  |
| 자산보유형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  |

출처 : 김대홍. 2019. 최신외국법제연구. 가업승계제도를 위한 일본의 세금지원혜택

- 5년내 사후관리요건 충족 못하면 유예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
- 유예대상 주식 매각시 양도비율만큼 유예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

# 일본의 가업승계지원 세법 규정

## □ 일본 사업승계세제(事業承継税制)의 2018년 2019년 세제개정 특례조치

| 구분      | 특례조치   | 종전 세제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전계획 제출 |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용기한    | 2018~2027<br>(개인사업자 특례는 2024년 3월말까지)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자산    | 법인 : 총 주식(2018년 개정)<br>개인 : 특정사업용자산(2019년 개정)      | 법인 : 총 주식의 2/3까지<br>개인은 적용안됨.         |
| 납세유예비율  | 100%   | 증여 100%/상속 80%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승계유형    | 법인 :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명 후계자<br>개인 : 선대 1명부터 후계자 1명 원칙 | 법인 : 복수의 주주로부터 1인 후계자<br>개인 : 해당사항 없음 |
| 고용유지요건  | 탄력적 운영   | 5년간 평균 80% 고용유지의무                     |

출처 : 김대홍, 2019. 최신외국법제연구. 가업승계제도를 위한 일본의 세금지원혜택

- 2018년 특례조치 :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을 도도부현에 제출하여 인정경영혁신등 지원 기관에 의한 지도 및 조언을 받고, 대상자산, 승계유형, 고용유지요건 완화
- 고용유지요건 80% 미만이라도 즉시 인정취소, 유예세금 납부가 아닌 신고 및 고용감소사유 소견기재 및 경영개선 지도
- 2019년 특례조치 : 종전에는 법인 주식에만 대상이던 것을 개인 특정사업용자산도 해당

# 독일의 기업승계지원 규정

## □ 독일의 기업승계세제

-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. 2008년 상속세법 및 평가법의 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하여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
- 사전증여와 상속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.

| 구분               | 사전증여세 세제지원 (상속제도 동일)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적용대상             | 업종이나 기업규모의 제한없음(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음)<br>(제외) 비사업용자산 10% 이상 기업<br>(예외) 2,600만 유로 초과 자산을 가진 기업은 필요성 심사 및 공제율 축소   |
| 가업경영기간           | 가업경영기간의 제한이 없음.   |
| 최대주주지분율          | 상장기업, 비상장기업 모두 25% 이상 지분보유 의무   |
| 수증자 요건           | 제한없음  |
| 사업용자산의 85% 공제요건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승계 받은 사업을 승계받은 후 5년 동안 그 재산과 함께 유지</li> <li>사업승계 후 5년 동안 사용인 급여의 합계가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%이상</li> <li>승계 자산 중 임대/투자자산 등 관리자산(passive asset) 비율 50% 초과금지</li> </ul> |
| 사업용자산의 100% 공제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승계 받은 사업을 승계받은 후 7년 동안 그 재산과 함께 유지</li> <li>사업승계 후 7년 동안 사용인 급여의 합계가 승계연도 급여총액 700%이상</li> <li>승계 자산 중 임대/투자자산 등 관리자산(passive asset) 비율 10% 초과금지</li> </ul>  |

---

## 4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

---

# 사후 기업승계 vs. 생전 기업승계

## □ 왜 경영자들은 생전 기업승계를 선호하는가?

- **선대경영자 사망시점의 계획하지 않은 상황 발생 가능성 우려** : 선대 경영자들은 예기치 않는 사망에 따른 가업승계로 인한 요건 미충족, 후손들의 분쟁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기업승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우려
- **안정적 환경에서의 후계자 교육 및 승계준비** : 후계 경영자가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경영기법과 기술을 승계받는 것을 선호
- **평균수명 연장으로 선대경영자 사망시점에는 후대경영자도 이미 고령** :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음
- **기업승계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선대경영자 생전에 준비 필요** : 2019년 중소기업 경영자 대상 설문(249명)에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시간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40.6%였음.

| 성공적인 가업승계 필요기간 | 2년미만 | 2년-5년 | 6년-9년 | 10년이상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응답비중           | 2.4% | 23.3% | 33.7% | 40.6% |

출처 :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보고서 2019.11. 중소기업 중앙회

# 중소기업이 생전기업승계를 선호하는 이유

---

## □ 중소기업의 사전증여 기업승계 선호이유 (박성욱외2인, 2015)

-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특성 :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 경영조직, 운영체계 없어 모든 의사결정이 대표이사 1인에게 집중 -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사망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망전 승계준비 필요.
- 경영 및 기술 Know-how의 대표이사 의존도 큼 : 후대 경영자가 선대경영자의 경영, 기술 Know-how 전수받고 체계화할 준비시간이 필요.
- 특정 매출처 의존도 높은 경향 : 선대경영자 유지해온 거래처 관계유지가 기업승계이후 기업 매출에 중요한 영향, 따라서 선대경영자 생전에 후계경영자가 거래처와 충분한 신뢰관계 구축할 수 있는 준비시간이 필요.
-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후손들간의 분쟁가능성 높음 : 생전 기업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발생

# 사후 기업승계 vs. 생전 기업승계

## □ 경영자는 사후 기업승계보다 생전 기업승계 실행 선호

- 2019년 중소기업 경영자 대상 설문에서 선호하는 주된 기업승계 방식으로 “일부 증여후 상속” > “아직 결정하지 못함” > “생전증여” > “사후 상속” 의 순으로 나타났음.

| 선호 기업승계방식 | 일부증여후<br>상속 | 아직 결정하지<br>못함 | 사전증여  | 사후상속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응답비중      | 39.4%       | 25.3%         | 21.7% | 2.1% |

출처 :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보고서 2019.11. 중소기업 중앙회

# 가업상속공제 vs.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요건 차이

| 연도              | 증여세 과세특례  | 가업상속공제   |
|-----------------|---|--|
| 근거법령            |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 |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18조   |
| 세제지원<br>금액한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억까지 10% 증여세 저율과세</li> <li>• 30억-100억까지 20% 증여세 저율과세</li> <li>• 선대경영자 사망시 상속세 정산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년이상: 200억</li> <li>• 15년이상 :300억</li> <li>• 20년이상 500억 (상속공제)</li> </ul>  |
| 적용기업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또는</li> <li>•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좌동</li> </ul>   |
| 세제지원<br>대상자산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업대상 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중 사업관련자<br/>산 비율 해당분</li> <li>• <b>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제외</b>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업대상 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중 사업관련<br/>자산 비율 해당분</li> <li>•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포함</li> </ul>  |
| 피상속인/<br>증여자 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증여자</li> <li>• <b>60세 이상의 부모</b> (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시 조<br/>부모 포함)</li> <li>• 최대주주로 50%(상장법인은 30%) 이상 주식을<br/>계속하여 보유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피상속인</li> <li>• 최대주주로 지분의 50%(상장법인의 경우<br/>30%)이상을 계속하여 보유</li> <li>• 기업영위기간동안 법정기간 이상을(50%,<br/>또는 10년중 5년, 10년이상 기간) 대표이사<br/>로 재직</li> </ul> |
| 상속인/<br>수증자요건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8세이상 거주자인 자녀/증여세 과표신고기한<br/>까지 가업종사/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<br/>취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8세이상 거주자인 상속인/<b>상속개시일전 2<br/>년이상 가업종사/상속세 과표신고기한부터<br/>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</b></li> </ul>  |

# 가업상속공제 vs.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요건 차이

| 연도          | 증여세 과세특례  | 가업상속공제  |
|-------------|---|---|
|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| 별도요건없음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%</li> <li>• (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는 10%) 이상을 처분 금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업종사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가업에 종사/수증자가 대표이사 등 종사</li> <li>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금지</li> <li>•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)하거나 폐업금지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가업에 종사/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종사</li> <li>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금지</li> <li>•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)하거나 폐업금지</li> </ul> |
| 지분유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여받은 지분을 7년간 유지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받은 지분을 7년간 유지</li> </ul>   |
| 고용유지        | 별도요건 없음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년간 각사업연도 고용유지요건(기준고용인원 또는 급여 80%) 또는 누적평균 고용유지요건 충족의무</li> </ul>  |
| 사후관리 위반시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주식 가액에 증여세부과(10~50%)</li> <li>• 이자상당액 가산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여 상속세부과</li> <li>•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별 추징율 차이 : 5년미만 100%, 5-7년 80%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부연납 특례     | 연부연납 특례 해당사항 없음<br>5년간 분할납부, 거치기간 없음.   |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10년(3년거치) 또는 20년(5년거치) 연부연납 가능.  |

# 증여세 과세특례의 이용실적

- 조특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용실적도 저조
- 2014년부터 비교하여 보면 매년 100여건 정도 적용신청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한 결과 건수와 금액이 확대.
- 2018년 204건, 3119억원의 이용실적.

| '14년 |         | '15년 |         | '16년 |         | '17년 |         | '18년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건수   | 금액      |
| 106  | 139,329 | 76   | 107,798 | 130  | 202,257 | 173  | 163,596 | 204  | 311,920 |

출처 : 국세통계연보(2020). 단위 : 건수/백만원

#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문제

## □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액 차이

-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8년 30억원으로 동일하였으나 현재 가업상속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,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임.
- 중소기업 실태조사(2019)에 따르면 기업승계 계획 경영자의 69.4%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할 것을 요청.

| 연도       | 가업상속공제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여세 과세특례          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2008     | 30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억                |
| 2009년 이후 | 10년이상: 60억<br>15년이상: 80억<br>20년이상: 300억   | 30억                |
| 2012년 이후 | 10년이상: 100억<br>15년이상: 150억<br>20년이상: 300억 | 30억                |
| 2014년 이후 | 10년이상: 200억<br>15년이상: 300억<br>20년이상: 500억 | 100억<br>(2015년 이후) |

출처 : 국세청 2020.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

#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시점의 조세부담 문제

---

-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부담의 이연 **일뿐 면제가 아님.**
  -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증여세는 최대 20%까지 부담하며, 선대경영자의 사망시점에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
  -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을 승계받더라도 증여세 납부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업승계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전증여를 포기할 가능성 존재.
  
- 해외사례와의 차이
  - 독일의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 모두 가업승계자산의 85% 또는 100% 과세가액 공제 -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세부담 없음
  - 일본의 경우 사전증여시 승계대상 주식의 2/3까지 증여세 전액을 납부유예한 후 증여자 사망시 납부유예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세 과세
  -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증여당시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.

# 증여세 과세특례의 법적 안정성 문제

- **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의 입법연혁**
  -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입법화
  - 가업상속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시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으로 이관됨.
  -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. - 2010년말까지 일몰규정 존재
  -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 - 2013년말까지 일몰규정 연장,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간 폐지
  
- **소관 법률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**
  - 기업승계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project :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만 동 제도활용가능
  -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2014년 이후부터 일몰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조특법 특성상 일몰조항 부활 가능함.
  - 소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승계 세제지원이라는 특성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시기와 수준이 상이하게 진행됨.

#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차이

-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차이
  -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내에 가업용자산 유지요건(7년내 20%, 5년내 10%), 고용유지요건을 준수해야 함.
  -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지분유지요건만 존재할 뿐 가업용 자산 유지 및 고용유지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.
  -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조세혜택이 차이가 날 경우 정당화 될 수 있으나, 이 차이를 해소할 경우 정당화되기 어려움.
  -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사후관리요건은 상속이나 사전증여 모두 동일함.
  
- 사후관리 요건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
  - 가업승계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존재(박성욱외 2012)
  -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2014년 이후부터 일몰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조특법 특성상 일몰조항 부활 가능함.
  - 소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승계 세제지원이라는 특성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시기와 수준이 상이하게 진행됨.

---

## 5.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

---

##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편방향

---

-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차이로 인한 혼란 :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합하여 기업승계 지원세제로 운영
- 경영자들의 사전증여의 선호도가 높음 :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요건의 완화 및 지원제도 강화
-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일치
- 가업승계의 개념에서 기업승계의 개념으로 전환

##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지원한도와 범위 조정

- 사전증여나 상속은 선대경영자의 생존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“기업승계” 및 소유권 및 경영권 변화라는 차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지원 규모의 차별화를 할 실익이나 근거가 없음,
- 기업승계 관련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한도를 **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로 일치.**
  -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법개정연혁을 보면 제도 초기에는 30 억원으로 동일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만 한도확대
  - 해외사례의 경우도 독일이나 일본은 사전증여나 상속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동일한 기업승계의 차원에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.
  - 사전증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고령 선대경영자의 경영을 후대경영자로 전환이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, 후대경영자의 경영기법 전수 및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이 됨.
- **기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아닌 가업승계 자산의 증여세 과세 특례로 개편**
  -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개인사업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,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.

#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“가업”을 “기업승계”로 전환

- 기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“가업”에 대한 조세특례지원
- **가업 개념에 의한 사전, 사후요건**
  - 10년간 사전경영요건
  - 60세 이상 부모(부모 사망시 조부모)가 자녀에게 증여시 적용
  - 업종변경 제한요건
- **해외사례의 경우 이러한 가업개념의 사전, 사후요건 없음.**
  - 사전경영요건/부모의 연령기준/선대경영자-후대경영자가 직계존비속 관계로 연결요건 등은 기업승계로 함 - 사업승계의 개념인 독일, 일본에는 없음
  - 업종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처럼 풍속산업, 자산보유형 기업 등의 제한업종이 존재할 뿐 업종의 변경이나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음.
- **기업승계를 “사업승계” 혹은 “경영승계”로 전환**
  - 선대경영자-후대경영자를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선대경영자가 지정한 수증자로 요건 완화
  - 10년간 사전경영요건, 60세 이상 요건의 경우 폐지
  - 업종변경 제한의 경우 유흥업종/규제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

##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근거법률 이관

---

- 기업승계 관련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근거법률을 **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이관**
- 일몰 규정 부활 가능성 차단
- 법률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영자들의 장기승계 계획마련시 불안감 완화 및 장기적 기업승계 계획수립 유도
- 상증세법상 상속공제의 일부분으로 기업상속공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세제지원으로 별도 항목으로 구성

#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에서 면세전환

---

- 기업승계 관련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방식을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증여세 저율과세가 아닌 공제에 따른 면세로 전환
  - 현행 제도는 사전증여시 100억원까지 10(20%)의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선대경영자 사망시 다시 상속세 정산
  -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기업승계 요건 검토를 증여시, 상속시 각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번거로움.
  - 저율이지만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분매각 등의 문제도 발생.
  - 증여세 저율과세이후 상속세를 정산하는 방식보다는 “사전증여”와 “상속”으로 인한 기업승계를 동일 선상에 놓고 “경영권의 이전과 기업승계”의 발생에 따른 미실현 이익의 과세이연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타당.
  - 사전증여나 상속시 과세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은 향후 소유경영자가 지분매각, 배당, 경영자 수당으로 실현시킬때 소득세로 과세.

## 기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재원마련을 위한 지원

---

- 기업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특례는 연부연납을 5년까지 인정
- 증여세 면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부연납을 기업상속공제 한도초과 시 상속세 납부액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일치조정

---

## 6. 결론

---

##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

---

-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의 완화를 위한 중견, 중소기업 성장지원 필요
- 중소기업 대표자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업승계 수요증가
- 장수기업이 비장수기업에 비해 경영성과와 부가가치 창출 우수, 가족기업으로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경영성과가 우수
- 기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포기현상 발생
- 기업들의 현행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한 불만족에 따른 조세회피전략의 부작용 발생

##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

---

- 중소기업의 경우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적합
-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지원한도, 지원방식이 상이
- 기본적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차이를 최소화
-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 또는 사업승계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

---

**감사합니다.**

---